



01



간이영수증 한도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간이영수증의 한도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

영수증이라고 쓰여진 용지

금전등록기영수증

접대비



“1만원 까지”

일반비용



“3만원 까지”

동 금액을 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이 되지 않음
 “ 동 금액을 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



한도금액을 맞추기 위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한도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1건으로 보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판단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하거나 결제시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 •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함) • 숙박업 •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경영지도사업 등 법에 열거된 시업서비스업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해서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사업 • 여객운송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p>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교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p>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영수증 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p>